

정책제언 I

국가균형발전, 응급의료취약지역 해소부터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한 구호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중 83%에 이르는 15개 지역에 중증환자를 적절히 진료할 수 있는 응급실이 없어 응급 상황에 처한 주민들의 원거리 이송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5개 지역은 소아청소년과 취약지역으로 어린이와 보호자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2022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자치도 내 응급의료취약지는 동해·태백·속초·삼척·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 등 18개 시·군 중 15곳에 달한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내 의료 현안은 그 어느 문제보다도 긴급하게 개선·보완돼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도내 열악한 의료 환경과 서비스 수준에 관한 문제가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강원인들이 당하고 있는 피해와 희생이 크다는 점에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교통사고와 각종 안전사고, 화재를 비롯한 다양한 재난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에서 현재와 같은 낙후된 의료체계와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다. 올해 초 응급실 의사 인력이 없어 단축 운영에 들어갔던 속초의료원의 사태를 겪은 강원인들에게는 부족한 의료진과 그로 인한 의료공백은 시급히 해결돼야 할 현안이다. 이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태백·속초·삼척·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 등 14개 시·군은 분만취약지, 홍천·평창·화천·인제·고성 등 5개 시·군은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등 ‘필수의료’ 각 분야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니 지역의 환자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서울과 수도권의 대형병원을 전전하는 기막힌 풍경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료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근본 원인은 ‘의사의 서울·수도권 편중’이라는 지적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지난달 정부는 지방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서울의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외과·소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진료 과목을 집중 지원하는 것도 의료혁신의 큰 열개로 제시했다. 이 모든 논의의 전제가 2006년 이후 16년이나 묶인 의과대학 입학 정원의 대폭 증원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의대 정원 확대는 단순한 의과대학생 수 늘리기가 아닌 의료진 부족으로 아파하는 지방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제대로 된 처방이 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의료 선진국이다. 그런 국가에서 ‘응급실 뺑뺑이’, ‘원정 출산’ 등의 농담 같은 현실을 더 늦기 전에 극복해야 하는 절박한 순간이다. 논의의 명분은 시작도 끝도 국민의 건강권 회복이다.

출처 : 강원일보 오피니언

정책제언 II

폭음하는 강원도, 해장 필요한 강원특별자치도



유 성 호 |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

한국의 음주 수준(빈도·음주량·위험음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와 모임 등이 줄면서 감소했다. 하지만 일상회복과 함께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지난 8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2년 지역건강건강통계’에 따르면 강원지역 월간음주율(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60.2%(전국 평균 57.7%)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고위험음주율(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여자는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사람의 비율)은 16.1%(전국 평균 12.6%), 연간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최근 1년 동안 음주한 사람의 고위험음주율)은 21.0%(전국 평균 16.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의 음주 경험률은 다른 나라보다 높고 음주문화에 관대하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은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중요하게 자리잡지 못하게 했다. 똑같이 마시고 취하기, 술잔 돌리기, 음주운전 등은 잘못된 음주문화를 보여주는 사례다. 술로 인한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 넘겨주거나, 술 문제를 가진 사람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천 명이 술 때문에 사망한다고 하며, 사회적 손실과 피해도 심각하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 높은 고위험 음주율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오랜 숙제다. 2019년 ‘강원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월 도민을 대상으로 음주폐해 예방정책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및 인식조사를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규제’도 권고했다. 춘천·원주·강릉시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별도 운영하고, 센터가 없는 15개 시·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노력 중이나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사업에 비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중독예방과 재활사업 운영에 역부족이다.

물론, 센터 설치만으로 지역사회의 음주문제가 한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독 예방·치료·재활 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수 있다. 중독폐해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 인식개선 등을 통해 개인의 음주가 가족·이웃·사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알코올 중독에 적극적인 치료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 오피니언

정부동향

행정안전부

추워지는 날씨, 난방기구 사용 시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 보일러 가동 전에는 배기통 이탈, 배관 찌그러짐 등 점검 철저 -
- 밀폐된 텐트 안 숯·난로 사용 매우 위험, 침낭·보온물주머니 등 활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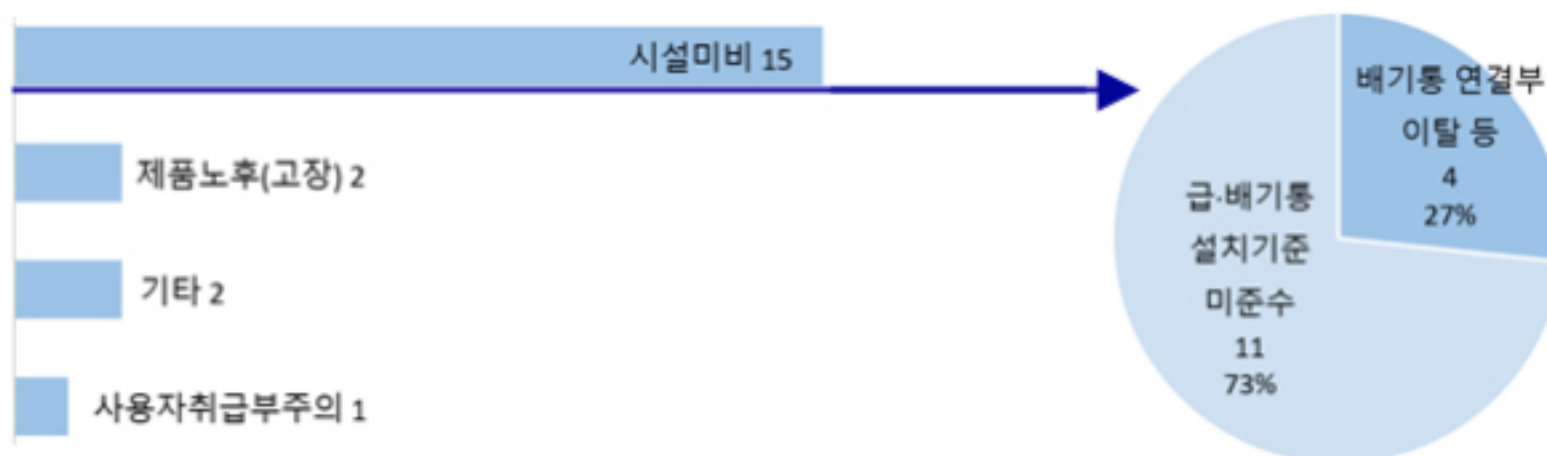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추워지는 날씨에 보일러 등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철저히 점검하고 수시로 확인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 최근 5년(2018~2022) 동안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 건수는 총 20건이며, 인명피해는 총 44명(사망 16, 부상 28) 발생하였다.
 - 특히, 인명피해 중 화재로 인한 부상자 1명을 제외한 4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보일러 사고(건)	20	6	6	3	1	4
사 망(명)	16	9	1	3	-	3
부 상(명)	28	10	7	3	4	4

[출처: 가스사고연감]

- 가스보일러 사고는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급·배기통 설치기준 미준수와 배기통 연결부 이탈 등의 시설미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노후 2건, 사용자 취급부주의 등이 있다.
 - ※ 사용처별 가스보일러 사고현황 : 주택 15건, 숙박업소 3건, 목욕장업·상가 등 2건

최근 5년('18~'22)간가스보일러 사고 원인별 현황



※ 기타: 인테리어 공사나 증축공사에 의한 배기불량 및 배기통 실내노출 등

[출처: 가스사고연감]

정부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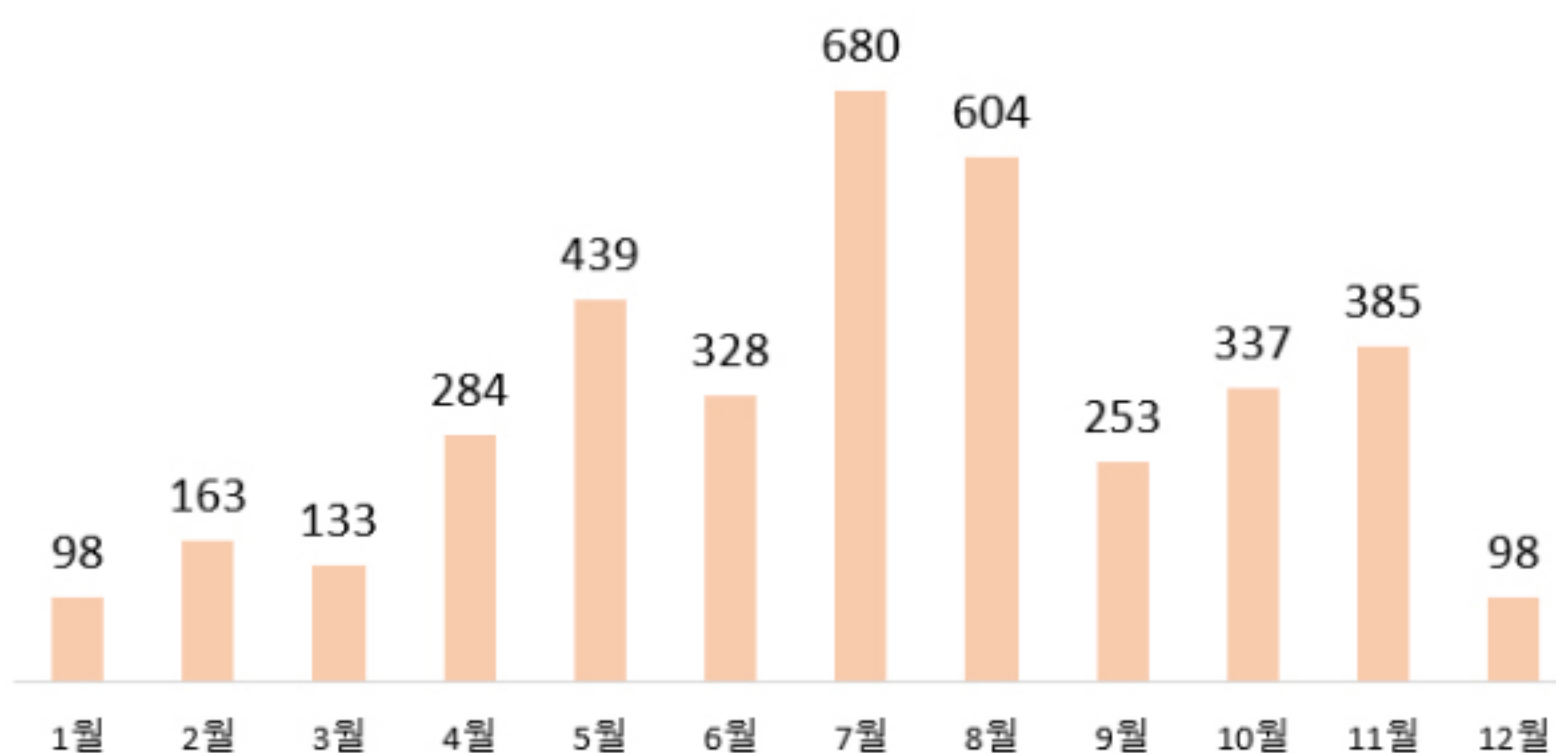
□ 또한, 날씨가 추워지며 캠핑을 할 때 텐트 안 화로나 이동식 난로의 사용은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이어지기 쉬워 매우 위험하다.

※ 사고사례(2023.10.22.): 광주 북구 대야저주시 주변 텐트에서 온열기구 사용 중일산화탄소 중독(추정), 사망 2명

- 최근에는 야외활동하기 좋은 봄·여름·가을뿐 아니라, 추운 겨울에도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 텐트 내 난방기구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20~'22)간 월별 야영(캠핑) 이용현황

(단위: 천박)



[출처: 국민여행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보일러(가스·기름)를 사용하기 전에는 배기통 이탈이나 배관의 찌그러짐 등을 꼼꼼히 살핀다.
 - 보일러를 켰을 때, 과열이나 소음, 진동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가스보일러 수리(A/S)업자, 가스공급자 등)에게 점검받은 후 사용하도록 한다.
 - 보일러실의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열어 두고 실내에는 일산화탄소 누출을 감지하는 경보기를 설치한다.
- 또한, 캠핑을 할 때는 야영장 주변의 시설배치나 대피소, 소화 기구 위치, 이용자 안전수칙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 모닥불을 피우기 전에는 주변 바닥에 물을 뿌려 화재를 예방하고, 마치고 난 후에는 잔불이 남지 않도록 확실하게 처리한다. 이때 모닥불은 전용 화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아울러,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를 하도록 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하여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다.

□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추워지는 날씨에 밀폐된 공간에서의 난방기구 사용은 일산화탄소에 노출되기 쉬워 매우 위험하다”라며,

- “보일러를 가동할 때는 배기통의 연결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캠핑 텐트 안에서는 난로 등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여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정부동향

[참고] 안전사고 예방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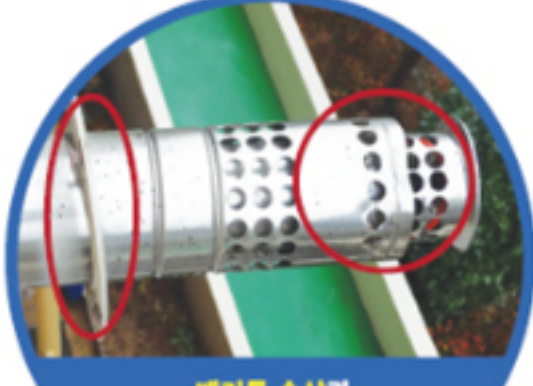
CO(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스보일러 배기통 연결 상태는
수시로 점검해 주세요.



사공표지판에 기재된
상세정보 확인은 필수입니다.



배기통 손상과
내부 이물질은 사고의 원인



정기적인 보일러 배기통 점검으로
CO중독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정부동향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최초 마련

-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 내 스톱킹 사건 처리 기구 운영, 피해자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등 규정 -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공공기관 내 스톱킹 피해 예방을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의무(피해자 보호조치, 불이익 금지),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이하 ‘예방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
 - 이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3. 1. 17. 제정, 7. 18.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의 스톱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 기관의 실정에 맞는 자체 예방지침 마련에 참고하도록 마련하였다.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경영평가 대상인 지방공기업의 장은 스톱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스토킹방지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예방지침 표준안은 스톱킹 예방교육, 스톱킹 사건 처리를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을 내용으로 한다.
 - 예방지침 표준안은 공공기관이 구성원에 대한 스톱킹 피해를 인지한 경우 조기에 개입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스톱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 이전에도 필요한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근무 장소 변경 등)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또한, 기관장 및 사건처리 담당자 등에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스톱킹 행위자가 기관장인 경우 상급기관으로 이관을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 특히, 성희롱·성폭력 교육 등 다른 폭력예방교육과 스톱킹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시행하고, 기존 고충상담기구와 스톱킹 사건처리기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관별 조직현황에 따라 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주요 내용

- 스톱킹 예방교육 실시 및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규정
-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근무 시간 및 장소의 변경 등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 피해자 등(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예방지침 마련 대상 기관이 표준안을 활용하여 스톱킹 예방지침을 제정할 것을 독려하고, 스톱킹 사건 발생 시 조사, 심의 등 단계별 업무 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스토킹 사건처리지침(매뉴얼)’도 연내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동향

행정안전부

빈대 확산세 조기 차단을 위해 지자체 방역 신속 지원

-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
- 오늘부터 4주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 운영(11.13.~12.8.) -
- 취약시설 방제를 위해 신규 승인된 방제 약품 등을 통한 방제 지원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빈대 출현과 피해사례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빈대 발생이 확인된 지역을 비롯하여 전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총 2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 이번 특별교부세는 「빈대 정부합동대응본부(본부장: 국무조정실장)」에서 오늘(13일)부터 운영하기로 한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4주간)’ 동안 지자체의 빈대 방제와 방역 효과성 제고를 위해 방제약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
 - 특히, 쪽방촌, 고시원 등 취약계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방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빈대 정부합동대응본부」에서는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 운영과 함께 ▲효과성 있는 살충제 도입, ▲정확한 정보 제공(빈대 정보집), ▲취약계층 방제 지원, ▲해외 유입 차단 등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힘을 모으고 있다.
 - 그 일환으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지난 10일(금) 내성이 덜한 빈대 방제용 살충제 8개 제품에 대하여 빈대 방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승인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새로 승인된 살충제를 신속히 도입하여 방역현장의 빈대 방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특교세 지원을 결정했다.
 - 지자체에서는 이번 특교세를 빈대 방제용으로 신규 승인된 살충제의 확보와 증기(스팀) 청소기, 진공청소기 등 물리적 방제 용품 구입 등 빈대 집중 방제·방역에 사용한다.
- 이상민 장관은 “최근 가정집, 대중교통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빈대 발생 신고가 있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오늘부터 시작되는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 동안 빈대 확산세를 확실하게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 “정부는 국민께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방제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책브리프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지방시대위원회, 2023)

 이민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부연구위원

지방시대 전략과 가치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생산, 고용, 기업, 인구 등에 걸쳐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전체 시군구의 40%(89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지방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음(행정안전부, 2021)
- 상기와 같은 실정을 극복하고자 지방시대위원회(2023)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제시함

그림 1.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출처: 지방시대위원회(2023), 윤석열정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지방시대위원회 보도자료

- 특히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도입하기로 함
 - 4대 특구는 모두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되고 운영될 계획임
 - 이 가운데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4대 특구별 주요 내용

① 기회발전특구

-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수립한 특구 계획에 따라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화된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정책브리프

- 소득·법인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뿐만 아니라 가업상속세를 포함하여 5가지 이상의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함
- 기업의 지방투자를 원활히 하기 위해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함
- 또한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들 정주 환경을 개선, 마련함

② 교육자유특구

- 교육자유특구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운영하는 특구를 의미함
-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 생태계 조성, 공교육 경쟁력 제고, 지방분권 강화, 규제 합리화 등 지방 교육개혁을 지원할 계획임
-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함께 지역 맞춤형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지역교육 발전전략을 상향식으로 제안하고, 중앙정부는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담당함
- 교육부가 갖고 있던 지역 대학 관리·감독 권한과 약 2조 원의 예산 집행 권한이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통해 2025년 지자체로 이양됨
- 지자체와 연계한 대학을 지원해 주는 글로컬 대학 사업은 30개 지방대를 뽑아 5년간 3조 원을 집중 지원함

③ 도심융합특구

- 도심융합특구는 성장 기반을 갖춘 주요 도시 도심을 대상으로, 공간조성(H/W)과 기업지원(S/W)을 융합 하고, 규제완화, 인센티브를 통한 특례를 제공하는 사업임
-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을 조성 하는 사업으로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임
- 도심융합특구의 경우 올 하반기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를 중심으로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우선, 5개 광역시 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임

④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와 로컬 창업·콘텐츠 생태계

-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확산, 문화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임
- 내년에는 지방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전시의 창작·제작·유통에 총 490억 원을 투입함
- 지방의 자원·문화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가치 창업가(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지역 대표기업인 로컬 브랜드 육성에 내년 총 88억 원을 지원함

기대효과 및 제언

- 기존 특구들과의 차별화된 운영방식으로 인한 사업추진 주체의 참여율 제고
 - 기존 특구들 대비 대폭 상향된 인센티브와 상향식 운영 방식의 적용을 통한 지방정부 및 기업 등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됨
- 특구유치를 위한 지역 내 과열 경쟁 우려
 - 특구지정은 시도당 1개라는 형평성이 부여되지만, 시도 내 지역 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소지역주의 현상 이 빚어질 우려가 상존하는 바,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대가 예상됨

정책브리프

- 기존 특구 및 국가균형발전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필요
 - 기존 지정된 특구(2020년 4월 기준 경제특구는 전국의 748개) 및 기존의 혁신도시, 추후 공공기관 이전 등의 관련 국가균형발전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및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에 대한 강구가 요구됨
- 특구지정의 성과제고를 위한 세부 제도의 면밀한 설계 필요
 - 특구의 인센티브, 즉 규제해제 및 세제혜택 관련 추가 관련법 통과가 요구되며, 각 특구별 선정 방식 및 기준의 선정립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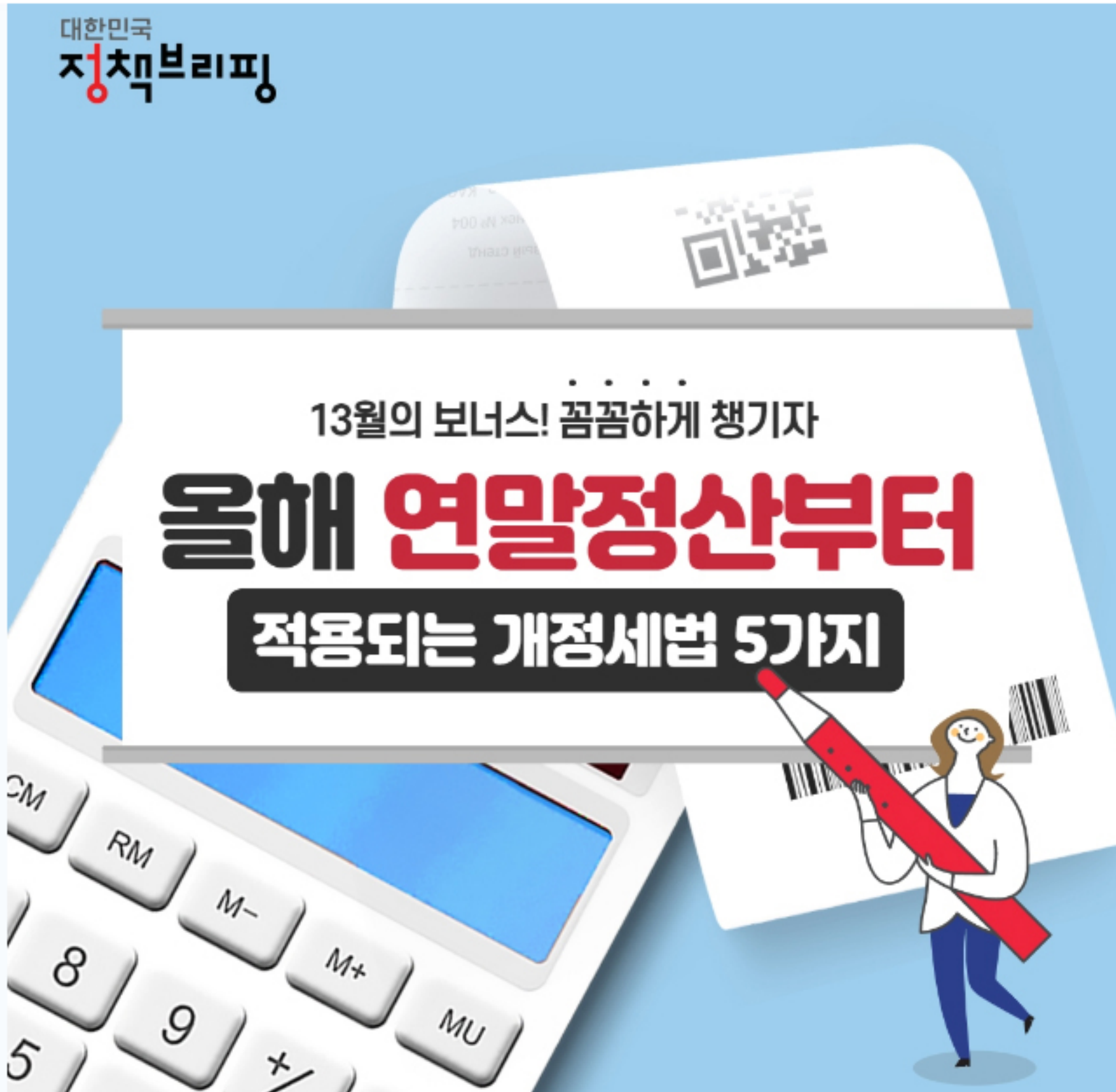
부록

• 표 1. 기회발전특구 주요 인센티브(종합) •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세제지원	1.~2. 소득·법인세	•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 •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법인세 감면 (5년 100% + 2년 50% 감면)
	3.~4. 취득세·재산세	• 특구로 기업 이전(수도권에서 이전 限) 및 특구 내 기업 창업 시 지방세 감면 * 취득세(100% 감면), 재산세(5년 100% + 5년 50% 감면) ** 지방정부의 지방세 감면 자율성 부여 검토
	5. 개발부담금	• 개발부담금 100% 감면
	6. 상속세	• 특구 이전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
② 재정금융 지원	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자율계정 확대를 통해 특구 인프라 확충 등 지원
	8. 기회발전특구 펀드	•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펀드를 조성, 기업·인프라 투자 활성화 • 펀드에 일정기간(10년) 이상 투자시 이자·배당소득 세제혜택(분리과세 9%)
	9. 저리금융	• 저리 용자 상품개발을 통한 특구기업 지원
	10.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확대(지원비율 5%p 가산)
③ 규제특례	11. 3종 세트	• 규제혁신 3종세트(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적용
	12. 규제특례제도	• 지방정부가 규제 특례를 직접 설계하여 신청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후 해당규제 특례 부여
④ 정주여건 개선	13. 주택 특별공급	• 특구 내 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10%)
	14. 주택 양도세	•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15.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교 설립지원

출처: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4대 특구로 댓 올린다, 지방시대위원회 보도자료(2023.9.14.)

알기쉬운 정책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됐어요!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①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②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



알기쉬운 정책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 ✓ 변경된 공제한도



총급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200만 원		X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 (900만 원)
-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원 → 4억 원
-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 15~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원)
-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원)



알기쉬운 정책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전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개정

과세표준	세율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https://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국세청